#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50 발의연월일: 2023. 5. 19.

발 의 자:이만희·이명수·박성민

김용판 • 정우택 • 최영희

이인선 • 전봉민 • 김상훈

장제원 · 허은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역 국회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는 누락돼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됨에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님

이로 인해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현금· 예금·증권과 달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 고, 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재산등록 시 등록의무자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의5등).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제4조제3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조의4제2호 본문 중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등"을 "신용정보회사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장의2에 제1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 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 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 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	②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
	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u>한다)</u>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	3
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	
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u>금액</u>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
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	와 내용)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	

- 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 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수량・금액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3. (생략)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 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 서 "재산등록·신고"라 한다)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o (청체기 기호)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부동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 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 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 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 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 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제35조

<u>신용정보회사등, 「특정</u>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하
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u>이하 같다</u>

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 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17(기관별 가상자산 취 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 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 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 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 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 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